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750
----------	------

2020년 9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0. 8. 12.

2.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20. 8. 21.

4. 상정일자 : 제29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20. 9. 10.)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당초 의결했던 기금 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 이상 초과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안번호 제1750호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19년 결산결과 예치금 회수 수입 증가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긴급 신고·상담 등의 사업비 증액으로 당초계획 13억 9천 8백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이 증가한 16억 3천 8백만 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1750호,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0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것임

2.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1). 제안이유

- 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금액 증가로 2020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예치금'이 당초보다 20% 초과 변경되었음
- 나.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19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수입계획의 예치금회수 금액 증가로 지출계획의 예치금을 2억 4,000만원 증가하여 당초 대비 20% 초과 변경하고,

나. 고유목적 사업비(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긴급신고·상담사업 및 기림의 날 기념 공모사업)를 편성하기 위하여 예치금을 △1억 7,000만원 감액하여 최종 예치금을 4억 1,8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다.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수입 계획					지출 계획				
구분	당초 (A)	1차변경	2차변경 (B)	증감 (B-A)	구분	당초 (A)	1차변경	2차변경 (B)	증감(B-A) (증감률)
계	1,398	1,638	1,638	240	계	1,398	1,638	1,638	240
기타회계 전입금	600	600	600	-	고유목적 사업비	1,030	1,030	1,200	170 (16.5%)
이자수입	397	397	397	-	기본경비	20	20	20	-
예치금회수	401	641	641	240	예치금	348	588	418	70 (20%)

※ 1차변경 :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증가로 예치금 2억 4,000만원 증액

※ 2차변경 :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긴급신고·상담사업 및 기림의 날 기념 공모사업 1억 7,000만원 편성(예치금 △1억 7,000만원 감액)

3. 검토의견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9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을 수입계획 중 예치금회수(2억 4,000만원)로 계상하고, 지출계획에는 예치금(7,000만원)과 고유목적사업비(1억 7,000만원)로 운용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

- 관련 법령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직전회계연도 결산결과로 인하여 지출계획중 예치금이 당초보다 20%, 7,000만원 증가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전년도 결산에 따라 기금 예치금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도록 정하고 있고,
 - 동 기금의 경우에도 기금운용부서가 지난 6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재원(2억 4,000만원)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결산결과로 인한 여유재원은 관련 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입 및 지출계획에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결산결과에 따라 지출계획중 예치금을 증가시키는 것은 의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기금운용부서로서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정책사업”에는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까지 모두 포함됨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있어 일부 개선이 필요한 점이 지난 '19회계연도 결산심사시 지적된 바 있어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의회의 의결취지를 존중하고자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제출된 안건의 주요내용중 '19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지난 2월, 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각각 2억 4,000만원을 기반영하고, 6월 개최된 심의위원회에서 예치금중 △1억 7,000만원을 감액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증액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 동 기금의 경우, '19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을 수입 및 지출계획에 반영한 것은 지난 6월 18일 개최된 심의위원회이며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 7,000만원 증액한 것 또한 같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제출된 안건중 “다.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용”은 실제 심의위원회의 회의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19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의 경우에도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2억 4,000만원)로 계상되었으나 지출계획에는 2억 4,000만원 전액이 예치금에 계상된 사실이 없으며 실제로는 7,000만원만 예치금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1억 7,000만원은 고유목적사업비에 계상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관련 법령에 따라 기금운용부서가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심의위원회의 회의결과와는 다른 사실을 의안에 기재하고 있어 의회로부터 심사·의결 받고자 제출하는 안건에 대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제출된 지출계획 변경내용중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긴급신고·상담사업, 기림의 날 기념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1억 7,000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증액 요청한 바,

- 동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경비에 해당되어 조례가 정한 기금의 용도에 적합한 사업으로 사료되나 **기림의 날 기념 공모사업**의 경우, 여성가족정책실이 일반회계로 추진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추진”과 사업내용이 중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관련 법령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미 일반회계에 유사사업이 편성되어 있어 재원의 한정성 등을 고려하여 동 기금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 동 계정의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은 ①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②일반예산(재무활동), ③행정운영경비(성평등기금)임에도 제출된 안건에 기재된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기본경비, 예치금”으로 임의 기재하고 있어 지출계획의 정책사업을 편의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2020. 9. 10.)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1750
----------	------

제출년월일 : 2020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금액 증가로 2020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예치금'이 당초보다 20% 초과 변경되었음
- 나.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2019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수입계획의 예치금회수 금액 증가로 지출계획의 예치금을 240백만원 증가하여 당초 대비 20% 초과 변경하고,
- 나. 고유목적 사업비(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긴급신고·상담사업 및 기림의 날 기념 공모사업)를 편성하기 위하여 예치금을 170백만원 감액하여 최종 예치금을 418백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다.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수입 계획					지출 계획				
구분	당초 (A)	1차변경	2차변경 (B)	증감 (B-A)	구분	당초 (A)	1차변경	2차변경 (B)	증감(B-A) (증감률)
계	1,398	1,638	1,638	240	계	1,398	1,638	1,638	240
기타회계 전입금	600	600	600	-	고유목적 사업비	1,030	1,030	1,200	170 (16.5%)
이자수입	397	397	397	-	기본경비	20	20	20	-
예치금수 회	401	641	641	240	예치금	348	588	418	70 (20%)

※ 1차변경 :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증가로 예치금 240백만원 증액

※ 2차변경 :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긴급신고·상담사업 및 기림의 날 기념 공모사업 170백만원 편성(예치금 170백만원 감액)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여성정책담당관 여성단체협력팀 천은진 (☎ 2133-5024)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1750
----------	------

제출년월일 : 2020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금액 증가로 2020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예치금'이 당초보다 20% 초과 변경되었음
- 나.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2019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수입계획의 예치금회수 금액 증가로 지출계획의 예치금을 240백만원 증가하여 당초 대비 20% 초과 변경하고,
- 나. 고유목적 사업비(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긴급신고·상담사업 및 기림의 날 기념 공모사업)를 편성하기 위하여 예치금을 170백만원 감액하여 최종 예치금을 418백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다.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수입 계획					지출 계획				
구분	당초 (A)	1차변경	2차변경 (B)	증감 (B-A)	구분	당초 (A)	1차변경	2차변경 (B)	증감(B-A) (증감률)
계	1,398	1,638	1,638	240	계	1,398	1,638	1,638	240
기타회계 전입금	600	600	600	-	고유목적 사업비	1,030	1,030	1,200	170 (16.5%)
이자수입	397	397	397	-	기본경비	20	20	20	-
예치금 회수	401	641	641	240	예치금	348	588	418	70 (20%)

※ 1차변경 :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증가로 예치금 240백만원 증액

※ 2차변경 :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긴급신고·상담사업 및 기림의 날 기념 공모사업 170백만원 편성(예치금 170백만원 감액)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여성정책담당관 여성단체협력팀 천은진 (☎ 2133-5024)